

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(제6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과징금은 영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
- 다.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(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으로 한다)으로 한다.
- 라.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.
- 마. 연간 매출액(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 매출액으로 한다)은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.
- 바.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으로 한다.

2. 1일당 과징금 산정기준

등급	연간 매출액(단위: 원)	1일당 과징금(단위: 원)
가	5억원 이하	10만원
나	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
다	10억원 초과 ~ 15억원 이하	20만원
라	15억원 초과 ~ 20억원 이하	25만원
마	20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	30만원
바	30억원 초과 ~ 40억원 이하	40만원
사	4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	50만원
아	50억원 초과 ~ 60억원 이하	60만원
자	60억원 초과 ~ 70억원 이하	70만원
차	70억원 초과 ~ 80억원 이하	80만원
카	80억원 초과 ~ 90억원 이하	90만원
타	90억원 초과 ~ 100억원 이하	100만원
파	100억원 초과	110만원